

붙임 5

우대사항

법정 우대대상자

구 분	대상자
취업지원대상자 (만점의 5% 또는 10%)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

사회형평·정부정책 및 공사주최 공모전 수상자

구 분	대상자
장애인 (만점의 5%)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
국민기초생활수급자 (만점의 5%)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북한이탈주민 (만점의 5%)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한부모가족 (만점의 5%)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다문화가족 (만점의 5%)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자립준비청년 (만점의 5%)	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
3자녀 이상 부모 또는 3형제 이상 본인 (만점의 5%)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또는 3명(본인 포함) 이상 형제를 둔 본인
공사주최 공모전 수상자 (만점의 5%)	공사주최 공모전 입상으로 수상한 자 (단, 체험형 청년인턴 인재영입 우대조치에 관해 공지된 경우에 한함)

※ 우대가점은 최고 가점 1개만 적용. 단,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중복 가능

※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 경우,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